

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세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5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5월 27일

발 의 자 : 이세열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영희, 김경영, 김제리,
김태수, 김평남, 김희걸,
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
박순규, 송명화, 송아량,
송정빈, 신정호, 양민규,
이영실, 이정인, 이태성,
임종국, 장상기, 장인홍,
전병주, 전석기, 최 선,
최웅식, 한기영, 홍성룡,
황규복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창의상의 목적에 부합하고, 행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수상부문을 조정하여 서울창의상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창의상 수여대상에서 투자·출연기관 직원을 제외하고 시민, 공무원(자치구 포함)으로 규정(안 제2조제1호).
- 나. 수상부문을 창의제안, 제안실행, 혁신시책으로 간소화하고 연 1회 시상(안 제3조).

다.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 추가(안 제5조).

- 1) 서울창의상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
- 2)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무수행 불가 시 직무대행 내용 추가
- 3) 위원 해촉으로 인한 신규 위원 위촉 시 신규위원의 임기 명시
- 4)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(의원, 장기치료, 비밀누설의 경우)

관련 조항 신설

라. 서울창의상 선정 심사기준에 행정안전부 '공무원 제안 규정'상의 심사 기준 반영(안 제10조).

마. 수상등급별 포상금 지급 기준액 통일(안 별표).

- 포상금 지급 기준액: 최우수(300만원), 우수(200만원), 장려(100만원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, 「공무원 제안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시민 및 서울시·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공무원의 업무혁신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창의상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·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·출연기관 직원(이하 “공무원 등”이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·자치구의 소속 공무원(이하 ‘공무원’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① 서울창의상의 시상부문은 창의제안, 제안실행, 혁신시책으로 하며, 부문별 수여대상을 다음 각 호로 하여 연 1회 시상한다.

1. 창의제안부문: 창의적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·공무원
2. 제안실행부문: 채택제안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
3. 혁신시책부문: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방식 등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

제4조제1항 중 “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수상자 및 서울창의대상의 수상자는”을 “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수상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서울창의상 및

서울창의대상의 수상자를”을 “서울창의상 수상자를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”를 “서울창의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에 대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”를 “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서울 창의상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”로 하며, 제6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
2.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심사기준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서울창의상 추천 및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창의성
2. 실현가능성
3. 효율성 및 효과성
4. 적용범위
5. 계속성

제12조 중 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각 부문별로 시상한다. 다만, 서울창의대상은 등급을 구분하지 아니한다.”를 “제3조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시상한다.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,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·관리하여야 한다.

[별표]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서울 창의상 포상금(제13조제2항 관련)

(단위: 천원)

수상대상	부 문	포 상 금		
		최우수	우 수	장 려
시 민	창의제안	3,000	2,000	1,000
시·자치구 공무원	창의제안	3,000	2,000	1,000
	제안실행	3,000	2,000	1,000
	혁신시책	3,000	2,000	1,000

※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창의적인 제안, 사업수행 등으로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·단체, 서울특별시·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·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·출연기관 직원에게 수여하는 서울창의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시민 및 서울시·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공무원의 업무혁신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창의상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
제2조(용어의 정의) (생략) 1. “제안”이란 시민·단체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. <u>서울특별시·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·출연기관 직원(이하 “공무원 등”이라 한다)이 서울특별시장(이하 ‘시장’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</u>	제2조(용어의 정의) (현행과 같음) 1. “제안”이란 시민·단체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. <u>서울특별시·자치구의 소속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서울특별시장(이하 ‘시장’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</u>
제3조(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) ① <u>서울창의상의 수여대상은 시민과 공무원 등으로 구분한다.</u>	제3조(서울창의상 시상부문 및 수여대상) ① <u>서울창의상의 시상부문은 창의제안, 제안실행, 혁신시책으로 하며, 부문별 수여대상을 다음 각 호로 하여 연 1회 시상한다.</u> 1. <u>창의제안부문: 창의적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·공무원</u> 2. <u>제안실행부문: 채택제안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</u>

현행	개정안
<p>②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시상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창의제안부문: 창의적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(연2회)</p> <p>2. 예산절감부문: 창의적 제안 및 예산낭비사례 신고를 통하여 예산절감·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(연1회)</p> <p>3. 지식경영부문: 시정연구 논문 성과가 우수한 시민(연1회)</p>	<p>3. 혁신시책부문: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방식 등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</p> <p><삭 제></p>
<p>③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시상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창의제안부문 : 창의적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(연2회)</p> <p>2. 제안실행부문 : 채택제안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(연2회)</p> <p>3. 혁신시책부문 :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방식 등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등(연2회)</p> <p>4. 상생협력부문 : 업무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무원 등(연2회)</p> <p>5. 예산절감부문 :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</p>	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한 시의 공무원(연1회)</p> <p>6. 지식경영부문 : 학습동아리·시정연구 논문(연1회),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(연1회)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등</p>	<p><삭 제></p>
<p>④ 서울창의상 부문별 수상자 또는 수상대상자 중 시민과 공무원 등에게 각각 서울창의대상을 수여할 수 있고, 시상주기는 연1회로 한다.</p> <p>⑤ 제1항 각 호의 부문별 세부 시상 분야, 시상인원은 시장이 정한다.</p>	<p><삭 제></p> <p>② 제1항 각 호의 부문별 세부 시상 분야, 시상인원은 시장이 정한다.</p>
<p>제4조(수상자 선정) ① 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수상자 및 서울창의대상 수상자는 제5조에 따른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</p> <p>②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수상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수상자 선정) ① 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수상자는 제5조에 따른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</p> <p>② 서울창의상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수상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
<p>제5조(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제</p>	<p>제5조(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서울창의상 선정에 관한 사항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서울</p>

현행	개정안
<p>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⑥ <u>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⑦ <u>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<u>창의상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⑦ <u>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⑧ <u>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</u></p> <p>2. <u>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</u></p> <p>3. <u>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</u></p>
<p>제10조(심사기준) <u>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정 및 추천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 창의성, 실현가능성, 효과성, 계속</u></p>	<p>제10조(심사기준) <u>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서울창의상 추천 및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창의성</u>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u>성, 적용범위, 경제성, 협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</u></p>	<p>2. <u>실현가능성</u></p> <p>3. <u>효율성 및 효과성</u></p> <p>4. <u>적용범위</u></p> <p>5. <u>계속성</u>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2조(시상등급) 서울창의상의 등급은 최우수, 우수, 장려로 구분하여 <u>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각 부문별로 시상한다. 다만, 서울창의대상은 등급을 구분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제12조(시상등급) 서울창의상의 등급은 최우수, 우수, 장려로 구분하여 <u>제3조 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시상한다.</u>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5조(관리) ① (생략)</p> <p>② 「<u>국민제안규정</u>」 제9조의2에 따라 <u>시장은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보존·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5조(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,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·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]서울창의상 포상금(제13조 제2항 관련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단위 : 천원)</p>	<p>[별표]서울창의상 포상금(제13조 제2항 관련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단위 : 천원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수상대상</th> <th rowspan="2">부문별</th> <th colspan="3">포 상 금</th> </tr> <tr> <th>최우수</th> <th>우 수</th> <th>장 려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>시 민</td> <td>창의제안</td> <td>5,000</td> <td>3,000</td> <td>2,000</td> </tr> <tr> <td>지식경영 (시정연구논문)</td> <td>5,000</td> <td>3,000</td> <td>2,000</td> </tr> <tr> <td>서울창의 대 상</td> <td colspan="3">10,000</td> </tr> <tr> <td>예산절감</td> <td colspan="3">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</td> </tr> <tr> <td>시·자치구 공무원</td> <td>창의제안</td> <td>3,000</td> <td>2,000</td> <td>1,000</td> </tr> <tr> <td>투자·출연기관 직원</td> <td>제안실행</td> <td>3,000</td> <td>2,000</td> <td>1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수상대상	부문별	포 상 금			최우수	우 수	장 려	시 민	창의제안	5,000	3,000	2,000	지식경영 (시정연구논문)	5,000	3,000	2,000	서울창의 대 상	10,000			예산절감	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			시·자치구 공무원	창의제안	3,000	2,000	1,000	투자·출연기관 직원	제안실행	3,000	2,000	1,000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수상대상</th> <th rowspan="2">부문별</th> <th colspan="3">포 상 금</th> </tr> <tr> <th>최우수</th> <th>우 수</th> <th>장 려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>시 민</td> <td>창의제안</td> <td>3,000</td> <td>2,000</td> <td>1,000</td> </tr> <tr> <td><삭제>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<삭제>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<삭제></td> <td colspan="3">-</td> </tr> <tr> <td>시·자치구 공무원</td> <td>창의제안</td> <td>3,000</td> <td>2,000</td> <td>1,000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제안실행</td> <td>3,000</td> <td>2,000</td> <td>1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수상대상	부문별	포 상 금			최우수	우 수	장 려	시 민	창의제안	3,000	2,000	1,000	<삭제>	-	-	-	<삭제>	-			<삭제>	-			시·자치구 공무원	창의제안	3,000	2,000	1,000		제안실행	3,000	2,000	1,000
수상대상			부문별	포 상 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최우수	우 수		장 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 민	창의제안	5,000	3,000	2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식경영 (시정연구논문)	5,000	3,000	2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서울창의 대 상	1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예산절감	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·자치구 공무원	창의제안	3,000	2,000	1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투자·출연기관 직원	제안실행	3,000	2,000	1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상대상	부문별	포 상 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최우수	우 수	장 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 민	창의제안	3,000	2,000	1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삭제>	-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삭제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삭제>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·자치구 공무원	창의제안	3,000	2,000	1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제안실행	3,000	2,000	1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				개정안						
	혁신시책		5,000	3,000	2,000	혁신시책		3,000	2,000	1,000	
	상생협력		5,000	3,000	2,000	<삭제>		-	-	-	
	지식 경영	학 습 동아리	3,000	2,000	1,000	<삭제>		-	-	-	
		시정연구 논문	3,000	2,000	1,000	<삭제>		-	-	-	
		공무원직접 수행학술 용역				<삭제>					
서울창의 대 상		10,000			<삭제>		-				
시 공무원	예산절감		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			<삭제>		<삭제>		<삭제>	

※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.
 ※ 제2조 2호의 “채택제안”의 경우 200,000원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.

※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.
 <삭제>